2021년 제1차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보고

(감사팀, '21. 10. 15.(금))

□ 목적

○ 우리원 반부패·청렴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·인권경영 실천을 도모

□ 회의개요

- (기 간) 2021. 10. 13.(수) ~ 15.(금)
- **(방 법)** 서면의결
- **(상정 안건 및 결과)** 2건 상정 및 통과

안건명	의결결과	재적인원	찬성	반대
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정(안)	원안의결	9명	9명	_
2021년 인권경영 계획 수립(안)	원안의결	9명	9명	_

□ 출석현황

○ 내·외부 위원 총 9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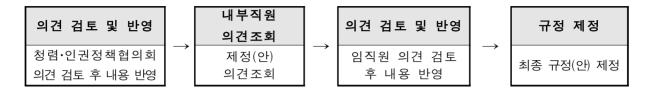
어비	연번 직명		۸ ۸	참석	비고
연번 직	1 0	성 명	소 속	여부	01.77
1	위원장	김ㅇㅇ	한국노인인력개발원	참석	_
2	위원장	신 〇	○○회계법인	참석	_
3	외부위원	정이이	법무법인 ○○○○	참석	_
4	외부위원	000	○○시립대	참석	_
5	외부위원	신ㅇㅇ	○○시니어클럽	참석	_
6	외부위원	장이이	노무법인 〇〇	참석	_
7	내부위원	김ㅇㅇ	한국노인인력개발원	참석	_
8	내부위원	남ㅇㅇ	한국노인인력개발원	참석	_
9	내부위원	전ㅇㅇ	한국노인인력개발원	참석	_

□ 상정 안건 주요 의견

- 기관의 인권경영 내실화를 위한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내실 있는 인권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
-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관련 규정이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인권경영 추진계획상 인권침해신고체계에 관한 내·외부 홍보를 통해 기관의 인권경영 의지를 전파할 필요성이 있음
- 향후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 인권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
- 규정 제정 관련 의견(전체적인 내용은 동의)
 - 제 4조 6항 '청렴인권실무협의회를 둔다' → '청렴인권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'로 하여 효율적·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
 - 제4조 7항 '선임자'의 개념 명확화(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인지, 우선 임명된 자인지 등)
 - 제3장 '청렴인권정책협의회의 직무 및 권한'이 제목인데 세부 조항에는 직무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 필요
 - 제5조 2항 정기 회의 소집은 정기적으로 추진하려면 '매년 2회' → '반기별 1회'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
- 인권경영 추진 계획(안) 관련 의견
 - 인권경영 선포 시, 노사공동선언 등 추진 검토(월례조회, 2022년 시무식 등에서 상징적 선포 등)

□ 향후 계획

○ (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정) 협의회 및 임직원 의견 검토 및 반영 후 제정(안) 마련



○ (인권경영 추진) 인권경영을 위한 지표 개선, 인권교육, 인권영향 평가 등 추진